

부산광역시사하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88
----------	----

제출년월일 : 1997. 10.15

제 출 자 : 사하구청장

1. 제안이유

전염병관리와 가족계획사업 위주로 운영되어 온 보건소를 지역주민의
 중추적 건강관리기관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보건소법을 지역보건법으로 개정
 (1995.12.29 법률 제5101호)시행됨에 따른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
 보완하려는 것임

2. 주요골자

종전에는 보건소의 설치 및 운영의 근거를 보건소법 제2조 규정에 의하던 것을
 지역보건법 제7조 규정에 의하도록 하며, 보건소의 관장업무를 보건소법 제4조
 규정에 의하던 것을 지역보건법 제9조 규정에 의하도록 함 (안 제1조 및 제3조)

3. 관계법령

가. 지역보건법 제7조 및 제9조

나. 지역보건법시행령 제7조

부산광역시사하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

부산광역시사하구보건소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

제1조중 “보건소법 제2조” 및 “동법시행령 제5조”를

“지역보건법 제7조” 및 “같은법시행령 제7조”로 한다

제3조중 “보건소법 제4조”를 “지역보건법 제9조”로 한다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행	개정안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<u>보건소법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</u>에 의하여 부산광역시사하구보건소(이하“보건소”라 한다)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규정함에 목적으로 한다</p>	<p>제1조(목적) <u>지역보건법 제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7조</u></p>
<p>제2조(생략)</p>	<p>제2조(현행과 같음)</p>
<p>제3조(업무) 보건소는 <u>보건소법 제4조</u>에 규정된 업무를 관장한다</p>	<p>제3조(업무).....<u>지역보건법 제9조</u>..... </p>